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2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 박균택·한민수·김현정

박정현 · 복기왕 · 이병진

주철현 · 김태선 · 김남근

박지원 · 정진욱 · 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 중지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형법」을 합헌적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법」의 해당 조문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 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 「형 법」의 개정만으로는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1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24條(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第224條(告訴의 制限)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형</u>
	법」 제328조가 적용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